

성주군 건축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의안 번호	
----------	--

제출일자 :	년 월 일
제출자 :	성 주 군 수

1. 개정이유

「건축법」 개정사항을 반영, 정비하여 건축행정 추진에
 만전을 기하고자 함.

2. 주요내용

- 일조 등의 확보를 위한 건축물의 높이제한 기준 정비 (안 제33조)
 - 같은 대지에서 두 동(棟) 이상의 건축물이 서로 마주보고 있는
 경우 종전에는 마주보는 두 동의 축이 남동에서 남서 방향인 건축물
 중 남쪽 방향의 건축물을 기준으로 채광 확보 거리를 산정하도록
 하던 것을 앞으로는 두 동의 축이 시계방향으로 정동에서 정서
 방향인 건축물 중 낮은 건축물을 기준으로 산정하되, 최소 채광
 확보 거리를 10미터로 정함으로써 공동주택 건설대지를 효율적
 으로 활용하고 다양한 공동주택 경관을 창출할 수 있도록 함.

3. 참고사항

- 가. 관계법령 : 「건축법」
- 나. 예산조치 : 별도조치 필요 없음
- 다. 성별영향평가분석 : 해당없음[가족지원과-43068(2022.10.7.)호]
- 라. 규제심사 : 해당없음[미래지역활력과-5136(2022.10.11.)호]
- 마. 입법예고 : 의견없음 (예고기간 : 2022.10.20.~2022.11.9.)

성주군 조례 제 호

성주군 건축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성주군 건축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33조제2항제2호 중 “남쪽 방향(마주보는”을 “높은 건축물(높은 건축물을 중심으로 마주보는”으로, “남동에서 남서 방향인 경우만 해당한다)의 건축물 높이가 낮고,”를 “시계방향으로 정동에서 정서 방향인 경우에만 해당한다)의”로, “남쪽을”을 “낮은 건축물을”로, “높은 건축물 각 부분의 높이의 0.8배(도시형 생활주택의 경우에는 0.4배) 이상이고”를 “10미터 이상으로서”로 한다

부 칙

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성주군 건축조례 일부개정조례안
비용추계서 미첨부사유서

가. 재정수반요인

해당없음

나. 미첨부 근거 규정

「성주군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」 제3조제1항제1호(예상되는 비용이 연평균 1억원 미만이거나 한시적인 경비로서 총 3억원 미만인 경우)에 해당

다. 미첨부 사유

성주군 건축조례 개정에 따른 비용 예상액은 없음

라. 작성자

허가과 건축허가담당 이원익